



성신여자대학교
SHINSHU WOMEN'S UNIVERSITY

정보화사회와 윤리

- 성신여자대학교 김도형 @ IT학부 -



제5장 인터넷 사회와 법

- 법의 정의와 형태
- 성문법과 불문법
-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법의 정의와 형태 (1/4)

- 법의 정의
 - 외부의 행위로 실행되었을 때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하여 결정하여 주는 것

구분	법	도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正義)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善)의 실현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 강제성▪ 양면성(권리와 의무 규율)▪ 타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면적 양심, 동기 중심▪ 강제성▪ 일면성(주로 의무 규율)▪ 자율성

법의 정의와 형태 (2/4)

- 법의 역할
 - 분쟁해결
 -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민사분쟁)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 및 그 기관과 개인 간의 다툼(형사분쟁,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능
 - 질서유지
 -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고, 형법은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법은 재산권의 한계를 정하고 개인의 자유훈에 의한 재산·신분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등을 규정
 - 공익추구
 -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훈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let alone 헌법, 행정법
 - 정의와 인권수호
 - 어느 누구로부터도 차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법의 정의와 형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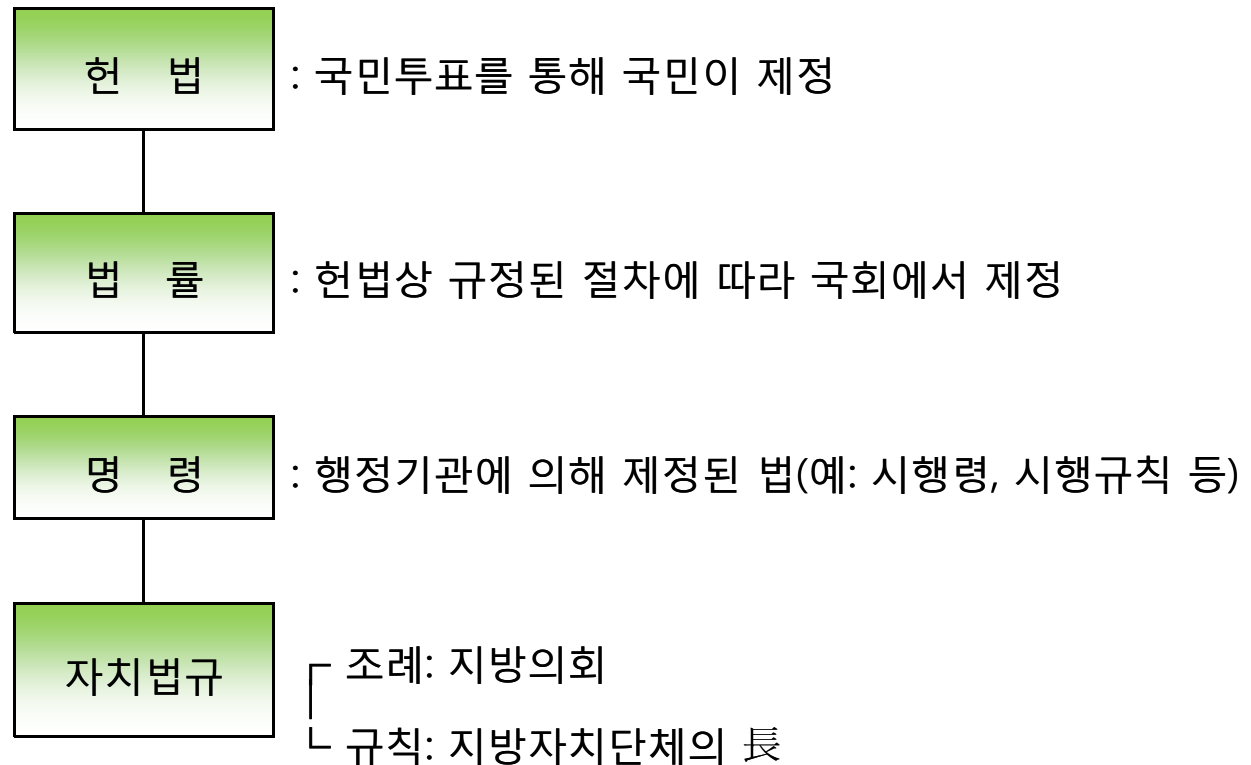
- 법의 형태 - 1
 - 공법(公法)
 - 헌법, 행정에 관한 법령, 형법, 각종 소송법 등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법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삼고 있는 법
 - 사법(私法)
 - 민법과 같이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회법
 - 노동법과 같이 사회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법의 정의와 형태 (4/4)

- 법의 형태 - 2
 - 실체법
 - 민법이나 헌법과 같이 권리의무의 범위를 설정한 법
 -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과 같이 분쟁해결의 과정을 정한 법
- 법의 형태 - 3
 - 일반법 vs. 특별법
 - 국내법 vs. 국제법
 - 성문법 vs. 불문법
 - 성문법 우선의 원칙 적용

성문법과 불문법 (1/10)

- 성문법 (1/9)
 - 입법 절차에 따라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만들어진 법
 - 성문법의 구조



성문법과 불문법 (2/10)

- 성문법 (2/9)

- 헌법

-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2조 제2항)를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제10조에서부터 37조 제1항까지)을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도록 규정
 - 국가권력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음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기관 상호간에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부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이들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

성문법과 불문법 (3/10)

- 성문법 (3/9)
 - 민법
 -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私法: 사 인간의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한다.

민법상 행위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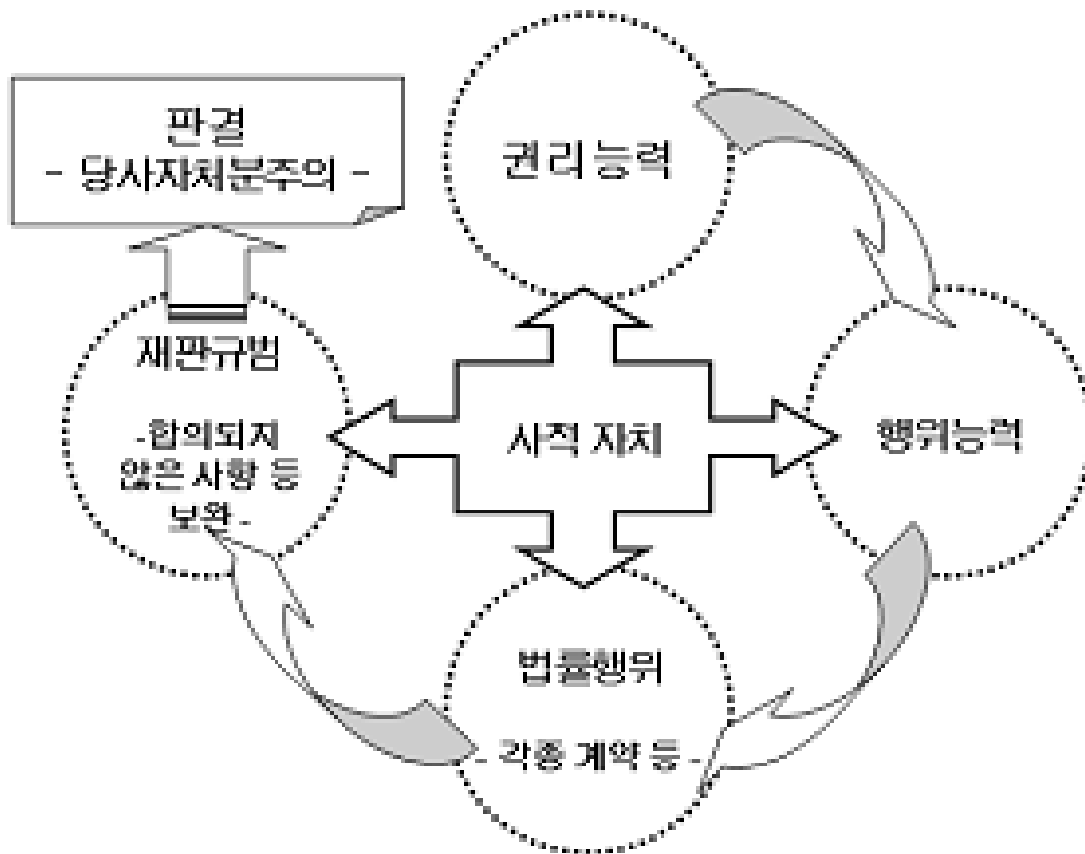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행위무능력자 또는 형사무능력자라 한다.

민법상 법률행위

행위능력을 갖춘 자가 일정한 법률효과(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성문법과 불문법 (4/10)

- 성문법 (4/9)
 - 민사관계와 민법



성문법과 불문법 (5/10)

- 성문법 (5/9)
 - 형법
 -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형벌규정들

징역과 금고, 벌금과 과료, 구류, 몰수, 과태료

형법상
행위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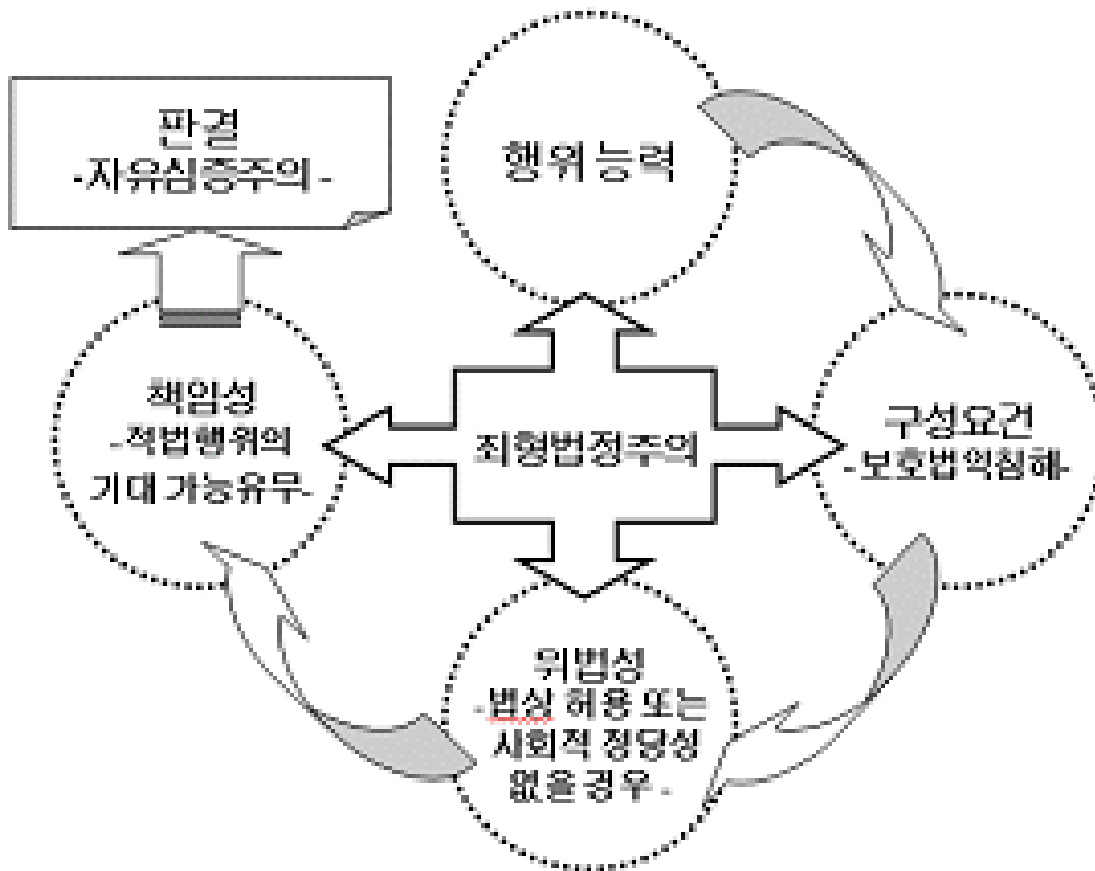
만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 내지 형사무능력자로 규정

형법상 행위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 형사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이익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범죄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국가형벌권발동의 원인이 된다.

성문법과 불문법 (6/10)

- 성문법 (6/9)
 -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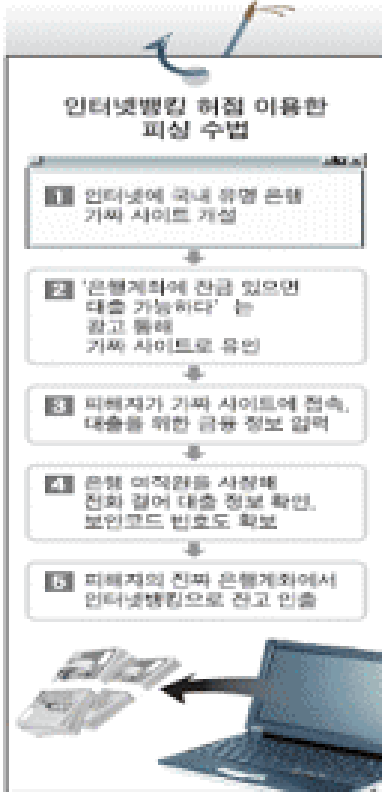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하며(위법성),
③ 책임이 있다(책임성)
- 고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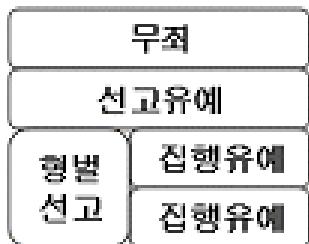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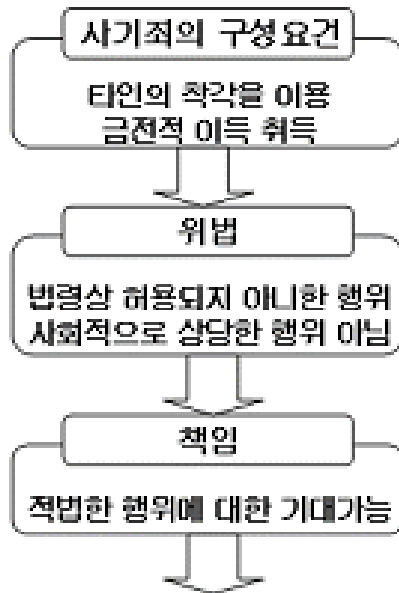
성문법과 불문법 (7/10)

- 성문법 (7/9)
 - 범죄의 성립과정과 형의 선고

<예: 피싱 사기>



14세 이상의 자로서
사회적 문벌력 유지



- 선고유예: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
- 집행유예: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임을 요한다.

성문법과 불문법 (8/10)

- 성문법 (8/9)

- 행정법

- 헌법상 보장된 각종 기본권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바를 정한 조직법

행정법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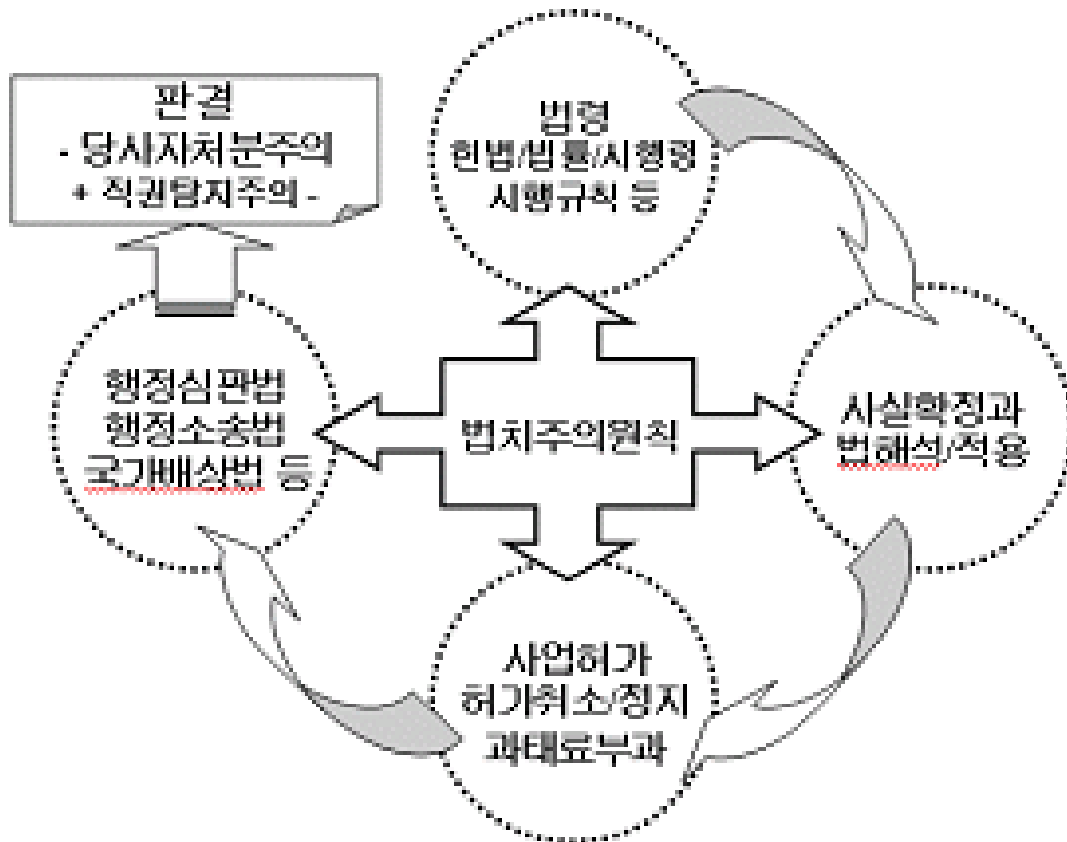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의무관계는 국가기관으로서 각부 장관 등과 같은 행정청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결과로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행하게 되는 인·허가, 영업취소·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법집행행위인 행정행위에 의하여 상대방 국민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법상 법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하면서 이들 권리주체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청(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일반국민에 대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령이 정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성문법과 불문법 (9/10)

- 성문법 (9/9)
 - 행정법에 의한 허가 등 과정



성문법과 불문법 (10/10)

- 불문법

- 헌법상의 입법기관 (국회 그리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과 각부장관)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회규범
- 관습법
 -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통상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법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른 것(즉, 관행의 존재와 해당 관행에 대해 법적 확신이 성립하면 관습법으로서 효력보유)을 의미하며, 통상인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서 있지 아니한 관행이나 관례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여 구별한다.
- 판례법
 - 동종의 사건에 대해 같은 판결을 되풀이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판례법은 우리 헌법상 법원은 법령에 대한 최고 유권해석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1/9)

-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 법령 (1/2)
 - 정보화촉진기본법
 -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865호로 제정된 것으로 '전기통신', '전기통신역무' 등 전기통신관련 기본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즉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전기통신설비의 운영·기술기준,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2/9)

-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 법령 (2/2)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전파법
 -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3/9)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의 육성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여 정부가 콘텐츠 개발 및 관련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문화·교육·보건·금융 등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 방송법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8호로 제정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4/9)

-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1/3)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된 프로그램의 유통·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작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외프로그램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과 기술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서 제정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5/9)

-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2/3)

- 전자서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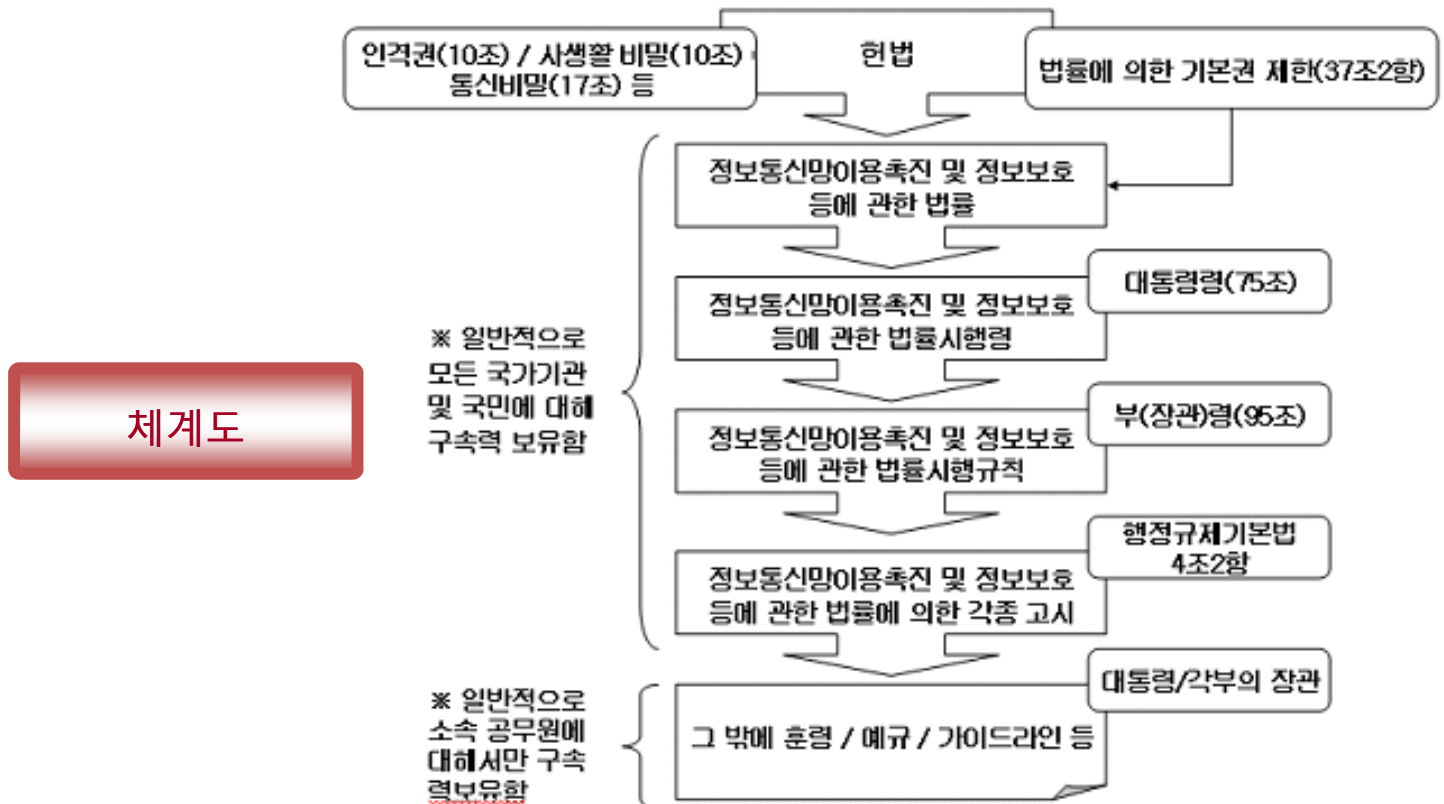
-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법률 제 5792호로 제정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전자거래를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6/9)

-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 법령 (3/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을 통한 정보산업의 발전을 유도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7/9)

-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관련 법령 (1/3)
 - 통신비밀보호법
 - 정보화사회로 급변모하는 현대사회는 광대하며 신속히 전파되는 양질의 정보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8/9)

-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관련 법령 (2/3)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중요자료가 유출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정부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

정보통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9/9)

-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관련 법령 (3/3)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 저작권법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1/9)

- 인터넷상의 불법과 위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규제 법규의 내용은 인터넷으로 인하여 형성된 일정한 법 영역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서, 기존 법률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 및 해석될 수 있다.
- 헌법
 - 제21조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7조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2/9)

- 형법(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 죄)
 -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3/9)

- 형법(명예훼손)

-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사기)

-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4/9)

- 형법(절도)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업무방해)
 - 제314조(업무방해)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5/9)

- 형법(비밀침해)

- 제316조(비밀침해)

-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모욕)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6/9)

- 형법(서류/기록 무효·위작·변작·파괴)
 -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6조(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7/9)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

-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8/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70조(벌칙)
 - 제71조(벌칙)
 -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4조(벌칙)

인터넷 윤리 관련 법 규제 (9/9)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 제28조(벌칙)
- 저작권법
 -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제137조(부정발행 등의 죄)
 -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 청소년보호법
 - 제14조(표시의무)
 - 제50조(벌칙)
 - 제51조(벌칙)
 - 제52조(벌칙)

화두: “법의 목적은 정의의 구현인가?”

- According to H. Zinn:
 - “가장 추잡한 불의는 법의 위반이 아니라 법의 적용에 의해 비롯된다.”
 - 예: 1975년의 [‘인혁당 사건’](#)
 - “개인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위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혹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와 비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
 - “사법제도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부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 “법정을 비롯한 각종 사법적 절차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하고 근엄해 보이지만, 법정 문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일상적이고도 격렬한 경제적 투쟁, 그리고 사회 질서라는 이름의 폭력이다.”